

[특집]

개별 교회 삶에서 교회법의 역할*

■
한 영 만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신부]

서
론

본
문

1. 친교인 교회의 법률적 특성
 - 1.1. 친교의 신비인 교회
 - 1.2. 교회의 사회적이고 가시적인 측면과 교회의 법률성
2. 교회법에 대한 이해와 교회법학 교육
 - 2.1. 교회법에 대한 이해
 - 2.2. 교회법학 교육
3. 개별 교회 안에서 교회법의 역할
 - 3.1. 교회법의 포괄적 봉사 영역
 - 3.2. 교회법 학위나 교회법학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임무들

결
론

서 론

많은 신자들이 가톨릭교회에도 법전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한 신자들조차 혼인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것도 교리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교회법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사랑과 친교인 교회에 법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목에 장애가 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국가법을 우선시 하는 법학자들은 법은 오직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법만 존재하며 교회의 규정들

* 이 글은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와 교회법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 관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 학술심포지엄(2019.11.9.)에서 발표한 논문임.

은 모두 국가법에 예속되기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실효적 측면에서 교회법을 부정하려는 이들도 있다.¹⁾

이런 생각들의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신비에 대한 편향된 인식과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단지 영적이고 비가시적인 존재로 이해하여, 교계제도를 비롯하여 그 어떤 조직이나 기구도 필요하지 않고 이 조직과 직무 사이의 관계를 위한 법은 초대교회에는 없었던 인간의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 사목활동과 교회의 법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사목을 방해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²⁾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고유한 ‘교회법전’(Codex Juris Canonici)³⁾을 갖고 있고 이것을 교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봉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교회법은 결코 사랑과 친교인 교회 사목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랑에 기초한 정의’⁴⁾에 근거하여 다양한 관계들을 하느님의 뜻과 교회의 정신에 따라서 인도하는 도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친교의 신비로 이해되는 교회 안에서 교회법은 무엇이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그런 교회법에 대한 학문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법 전문가 양성이 왜 필요한지 실질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는 것이다.

1) Cf. Carlos J. Errázuriz M, *Il Diritto e la giustizia nella Chiesa*, Milano: Giuffrè, 2000, pp.21~28.

2) Cf. *Ibid.*, pp.5~14.

3) 가톨릭교회는 ‘교회법전’(Codex Juris Canonici)과 동방가톨릭교회를 위한 ‘동방교회법전’(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 두 개의 법전을 갖고 있다: Joannis Paulus Pp. II(교황 요한 바오로 2세), *Codex Juris Canonici*, 1983; Joannis Paulus Pp. II, *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 1990.

4)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기록한 규율법」(*Sacrae Disciplinae Leges*), 1983.

본 론

1. 친교인 교회의 법률적 특성

1.1. 친교의 신비인 교회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교회를 설계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자신에 대해서 공의회 문헌, 특히 교회에 관한 교회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을 통해 말하고 있다.

교회헌장 여러 곳에서 교회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하느님의 나라,⁵⁾ 목장 혹은 양떼,⁶⁾ 하느님의 경작지,⁷⁾ 하느님의 집,⁸⁾ 가정,⁹⁾ 그리스도의 정배,¹⁰⁾ 하느님의 성전,¹¹⁾ 성사와 도구,¹²⁾ 그리스도의 신비체,¹³⁾ 하느님 백성,¹⁴⁾ 사회¹⁵⁾ 등은 교회 자신에 대한 표상들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교회 자신에 대한 표현들을 통합하여 교회의 신비를 잘 표현하는 단어는 ‘친교’(communio)일 것이다. 그래서 1985년에 개최되었던 세계주교대의회회의의 2차 임시총회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친교의 개념은 교회 신비의 핵심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평가된다.¹⁶⁾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여러 곳에서 광범위하게 친교의 개념은 잘 나타나고 있었다.¹⁷⁾

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5항.

6) 같은 글, 6항.

7) 같은 글, 6항.

8) 같은 글, 6항.

9) 같은 글, 6항.

10) 같은 글, 6항.

11) 같은 글, 6항.

12) 같은 글, 1, 9, 48항; 전례헌장 5항.

13) 교회헌장 7항.

14) 같은 글, 9~17항.

15) 같은 글, 8, 9, 20항; 사목헌장 40항.

16) 참조: 세계주교대의회회의, 제2차 임시총회, 최종보고서 II, c, 1.

17) 참조: 교회헌장 4, 8, 13~15, 21, 24~25항; 계시헌장 10항; 사목헌장 32항; 일치교령

그러나 교회의 신비를 잘 표현하는 친교라는 개념이 때때로 축소된 개념으로 해석되어 가톨릭 교회론을 변질시키는 위험도 있었다. 이런 위험에 대응하여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계실 때 발표한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은 친교의 올바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요제프 라칭거(Joseph Ratzinger, 1927~) 추기경은 이 서한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하는 글에서 앞서 언급한 문제, 다시 말해서 친교의 개념을 축소하여 해석하고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면서 가톨릭 교회론을 변질시키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즉시 교회와 연결된 친교의 개념은 ‘하느님 백성’의 개념과 함께 신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의회 이후에 교회론에 대한 진전과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열쇠에 해당하는 개념을 축소하여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가톨릭 교회론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는 위험을 초래했습니다.”¹⁸⁾

좀 더 자세하게 말해서 가톨릭 교회론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은 친교의 개념을 수평적으로만 이해하여 사회학적 개념으로만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친교의 개념을 이렇게 저렇게 오직 수평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축소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교회의 교계제도를 반대하는 주장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지역 교회들의 연합체이고 지역교회는 모든 의미에서 보편교회를 선행한다는 것입니다.”¹⁹⁾

2~4, 14~15, 17~19항, 22항.

18) Congregazione per la Dottrina della Fede, *Communione notio, lettera e commenti*, LEV, 1994, p.7.

19) *Ibid.*, p.7.

따라서 교회의 신비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친교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신앙교리성 서한의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친교는 두 가지 차원을 내포한다. 하느님과의 친교, 곧 수직적 차원과 인간들 간의 친교, 곧 수평적 차원이다:

“친교의 개념이 항상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교회론 해석의 열쇠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서의 가르침과 교부들의 전통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친교는 언제나 두 가지 차원, 곧 수직적 차원(하느님과의 친교)과 수평적 차원(인간들 간의 친교)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²⁰⁾

친교의 또 다른 측면은 그 비가시성과 가시성이다. 곧 교회의 친교는 한편으로 가시적이지만 한편으로 비가시적인 것이다:

“교회의 친교는 불가시적인 동시에 가시적인 것이다. 불가시적 실재로서의 친교는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이루는 친교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하며 같은 믿음과 같은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본성을 같이 나누어받고 있는, 같은 인간들끼리의 친교이기도 하다. 지상 교회에는 이러한 불가시적 친교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각 성사들 그리고 교계적 질서 안에 있는 가시적 친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 교회 친교의 불가시적 요소들과 가시적 요소들 사이의 이러한 관계가 구원의 성사로서 교회를 이룬다.”²¹⁾

위에서 교회에 적용된 친교의 개념을 요약한다면 수직적 차원(하느님과의 친교), 수평적 차원(인간들 사이의 친교), 비가시적 차원(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다른 인간들과 맺는 내밀한 친교), 가시적 차원(사도들의 가르침과 성사들, 교계와의 친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²⁾

20) 교황청 신앙교리성,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I., 3항., 『회보』 71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3쪽.

21) 같은 글, I., 4항., 13쪽.

22) Cf. Congregazione per la Dottrina della Fede, *op.cit.*, p.8.

이제 우리가 살필 점은 개별 교회²³⁾에 관한 것이다. 우선 이 개별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들이 보편교회와 ‘상호 내재성’²⁴⁾의 특수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앙교리성 친교에 대한 서한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선언한다:

“개별 교회 전체에 친교라는 말을 유비적으로 적용시키는 진정한 뜻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들 교회들이 “단일한 그리스도 교회의 부분”으로서 전체 교회, 다시 말해 보편교회와 상호 내재성의 특수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모든 개별 교회에는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변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현존하며 활동”하기 때문이다.”²⁵⁾

친교의 신비로 이해되며 주님의 제자들의 전세제적 공동체인 보편교회는 “개인과 단체, 시간과 장소의 특수성과 다양성 안에서 현존하며 활동한다.”²⁶⁾ “보편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교회가 존재한다.”²⁷⁾

23) 제라드 필립(Gerard Philips)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개별 교회의 개념과 개별 교회들 안에 보편교회의 신비가 현존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 개별 교회들은 보편교회의 모습대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유일하고 하나인 보편교회는 그것들 안에 또 그것들로서 존립한다. 이런 전망은 커다란 주의를 요구한다. 개별 교회들은 부가물 혹은 (어떤 국가)연방의 형태로 보편교회를 형성해 주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 반대로 모든 개별 교회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현존한다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다(«é»la Chiesa di Cristo). 그리고 개별 교회들에는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선사하신 구원의 모든 수단이 제공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 바오로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의 수신자는 깊은 뜻이 있다(1코린 1,2; 2코린 1,1): ‘코린토의 교회에게’라고 쓰여 있지 않고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ecclesiae Dei, quae est Corinthi; to the church of God that is in Corinth)라고 쓰여 있다. 하나이고 나뉘지 않는, 같은 교회가 로마, 필리피, 에페소 등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Gerard Philips, *La Chiesa e il suo mistero nel concilio Vaticano II*, Jaca Book, 1975, p.271.

24)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영만, 「교회법 제368조에 나타난 보편교회와 개별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내재성(mutua interioritas)에 대한 고찰」, 『가톨릭신학』 제32호(2018/여름), 93~102쪽.

25) 교황청 신앙교리성, 앞의 글, 14쪽.

26) 같은 글, II., 7항., 14쪽.

27) 교회헌장 23항.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적 모든 요소들을 갖춘 보편교회가 이 개별 교회들 안에 현존한다는 것이다. 이 개별 교회들은 주로 교구들이다.²⁸⁾ 교구는 주교에게 위탁된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으로서 사제단의 협력을 받으면서 복음과 성찬을 통하여 성령 안에 모인 개별 교회인 것이다.²⁹⁾

1.2. 교회의 사회적이고 가시적인 측면과 교회의 법률성

우리는 앞서 친교란 개념에는 수평적이고 가시적 차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친교의 개념이 수평적이고 사회적이며 가시적 차원으로만 이해될 수 없겠지만 이 지상의 교회 생활에서 수평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실제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은 ‘가시적 구조’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 ‘가시적 집단’ ‘지상의 교회’란 표현을 통해서 지상 교회의 수평적이고 가시적인 차원을 표현하고 있다: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믿음과 바랍과 사랑의 공동체인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 위에 가시적인 구조로 세우시고 끊임없이 지탱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진리와 은총을 널리 베푸신다.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 가시적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 지상의 교회인 동시에 천상의 보화로 가득 찬 이 교회는 두 개가 아니라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훌륭한 유비로 교회는 강생하신 말씀의 신비에 비겨지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께서 받아들이신 본성도 구원의 생명체로서 말씀과 떨어질 수 없도록 결합되어 말씀에 봉사하듯이, 다르지 않은 모양으로 교회의 사회적 조직도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 봉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로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톨릭교회 안에 존재한다.”³⁰⁾

28) 참조: 물론 교구에 준하는 성직 자치구, 자치 수도원구, 대목구, 지목구, 직할 서리구 등도 교구에 준한다. 교회법 제368조.

29) 참조: 교회법 제369조.

30) 교회헌장 8항.

이 문헌은 “사랑의 교회와 법의 교회, 성령의 교회와 권위의 교회”³¹⁾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유일한 중재자이신 분과 영구히 결합된 가시적 사회”³²⁾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 인용된 표현들을 통해 공의회는 교회의 이 두 요소들이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고 그리하여 “동일한 실재의 두 가지 상황 혹은 완전히 하나를 형성하는 두 요소들”³³⁾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비체인 교회와 교계적 조직은 그리스도가 설정한 동일한 실재의 독특한 측면을 각각 표현하는 것”³⁴⁾이다.

교회의 가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은 그 비가시적이며 영적인 측면과 분리될 수 없고 오히려 유비적으로 강생하신 말씀의 신비에 비겨지는 것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 봉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을 목적한다.³⁵⁾

인용한 문헌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교회가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societas constituta et ordinata)로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리에서 ‘교회 공법학’(Jus Publicum Ecclesiasticum)에서 교회를 ‘완전한 사회’(Societas perfecta)로 개념 지었던 내용을 설명하거나 공의회 이후에 이 개념을 설명한 논문들을 연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전체적 본성에 속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영적 측면과 가시성이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람들이며, 국가의 경우 국민이 국가 사회의 구성원인 것이다. 사회로서의 교회의 구성원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다. 사회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경우라도 그 사회는 인간들의 사회이지만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종교적 성격의 인간 사회”³⁶⁾란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1) Gérard Philips, *op.cit.*, p.107.

32) *Ibid.*, p.108.

33) *Ibid.*, p.108.

34) *Ibid.*, p.108.

35) *Ibid.*, p.108.

36) J. F. Castaño, *Introduzione al diritto costituzionale della Chiesa*, Roma, 1994, p.56.

이것은 친교의 신비로서 이해되는 교회를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이며 이 사회란 용어가 앞서 신앙교리성 장관 요제프 라칭거께서 지적했듯이 단순한 사회적인 의미와 심리적 의미로 이해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교회의 규율, 교회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만일 순수 인간학적 차원과 인류 문명사에서 인류가 경험한 법률적 유산에 근거하여, 교회가 사람들의 사회인만큼 법률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률에 의하여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법의 본질을 너무도 축소시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³⁷⁾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교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례 받은 인간들의 사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포함하지만 교회의 본성과 사명에 결합된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 그 법률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 교회와 교계적 교회를 분리하면서 교계적 교회를 부인하는 일, 그리고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분리하여 가시적 교회를 부인하는 것, 법률성을 지닌 교회와 사랑의 교회를 분리하여 법률성을 지닌 교회를 부인하는 위험에 대해 앞서 인용된 표현에서 나오듯이 교회의 이런 본성을 말씀의 육화 신비와 유비를 통해 분리될 수 없이 일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³⁸⁾ 교회의 이런

37)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전제로 그 사회의 안정과 통치, 유지를 위해 인간들은 법이 필요하다는 점은(Ubi societas ibi jus) 사회의 법 현상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초자연적 실재인 교회의 법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지상 교회를 구성하는 인간은 여타의 인간이 아니라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들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 사회에서 이해되는 법 개념이 교회의 법에도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측면만으로 융합적 성격의 교회의 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Cf. *Ibid.*, pp.60~61.

38) 참조: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개신교 법학자는 루돌프 쇼임(Rudolph Sohm)을 들 수 있다. 그는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인도되는 교회론에 기초하여 교회의 본성과 법의 본성은 상반되는 것이고 교회는 본성상 교회법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교회의 본성은 영적인 것인데 비해서 법의 본성은 현실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법은 단지 역사적 필요성에 있는 것이고 인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Cf. Klaus Mörsdorf, *Fondamenti del Diritto Canonico*, Marcianum press, 2008, p.181.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회칙 「그리스도의 신비체」에서 이미 교회의 법률적 성격을 부인하는 오류를 다음과

분리될 수 없는 본성에 대해서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었다:

“모든 제도적 요소들과 법률적 요소들은 거룩한 것들이고 영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하여 생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교회’와 ‘사랑의 교회’는 단 하나의 실재이며 교회의 내적 생명의 외적 표징이 법률적 형식인 것입니다.”³⁹⁾

교회가 지닌 법률적 성격, 그 법률성은 교회의 구조 안에 내재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신적 기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법률성은 교회의 본성에 결합된 것이지 외적으로 부관된 어떤 것이 아니란 것이다.

교회의 본성에 내재된 법률성은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의 법률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가시적 측면과 영적인 측면, 수직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 선포와 성사 집전을 통해 교회를 건설하며 가시화시킨다. 교회의 창립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선포와 성사 집전에 직접 활동하시며 당신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신다.⁴⁰⁾ “이 말씀과 성사 집전은 주님의 구원 사업 실현을 위한 두 가지 방식이지만 상호 하나의 살아 있는 활동을 하면서 결합되어 있고 두 가지 모두 법률적 성격을 지닌다.”⁴¹⁾ 우선 말씀 안에 내재하는 법률적 성격을 독일의 법신학자인 클라우스 뢰르스도르프(Klaus Mörsdorf)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느님 말씀 선포에는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고 지탱하는 일종의 힘이 내재해 있다. 이 힘은 가시적 교회 건설의 본질적 요소다. 말씀 선포

같이 지적하셨다: “Perciò Noi deploriamo e respingiamo l'errore funesto di quelli che sognano un Chiesa autodieata, una socicita fondata e mantenuta solo mendiant l'amore, ch'ess-con un certo disprezzo-contrappongono ad un'altra, che chiamano Chiesa del diritto. E completamente sbagliato presentare una simile differenziazione.”

39) Paolo VI, “Discorso al Congresso Internazionale di Diritto Canonico di Milano(1973)”, *Comunicaciones* 5(1973), 126~130.

40) Cf. Carlos J. Errázuriz M, *op.cit.*, p.63.

41) Klaus Mörsdorf, *op.cit.*, p.183.

는 주님의 계명에 따른 것으로 법률적 성격을 지닌다. 주님은 거룩한 계명들을 남기셨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단지 말씀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동의의 통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느님 아드님에 의해서 선포되었다는 형상적 이유 때문에 그것에 순명해야 하는 것이다. [...] 주님은 분명하게 하느님 말씀의 법률적 성격을 보여주신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마르 16,16). 주님은 이런 명령적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순명을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사용하신 그 힘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사도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에게 모든 법률적 권한을 부여하시면서 당신을 대신하도록 세우셨다.”

인용된 글에서 잘 표현되고 있듯이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 아드님에 의하여 선포된 것이며 예수님은 당신 아버지로부터 이런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이 말씀이 지닌 법률성은 구원에 직결된 요청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을 통하여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⁴²⁾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성사 집전과 연관된 법률성이다:

“성사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가시적이며 감각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구원의 신비는 성사적 표징들 속에 육화한다. 다시 말해서 사물의 자연적 질서에 기원을 둔 표징적 행위들 안에서 구원의 신비는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런 표징들은 당신 구원 사업의 효과적 방법으로 주님께서 정하는 것들이다. 비가시적 구원의 실재의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표징으로서 성사는 법률적 표징으로 사용된다. 바로 여기에 성사적 뿌리와 깊게 연관된 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 법률적 표징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비가시적 실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그리고 이 법률적 표징은 감각적으로 드러난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표현하면서 표징을 통하여 비가시적인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행위를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법률적 표징은 백성의 관습과 지속적인 관련을 맺고 있고 이 원초적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법률적 표징은 공동체 안에서 법률로 자리 잡아가고 공동체를 통해서 강제하는 법률적 원칙들을 만들어 가는 힘을 획득하게 된다.”⁴³⁾

42) Cf. Carlos J. Errázuriz M, *op.cit.*, p.64.

클라우스 뢰르스도르프는 성사의 법률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법률적 표징과 성사적 표징 사이의 유비적 방식을 통해서 설명한다.⁴⁴⁾ 그리고 말씀과 성사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 둘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한다.⁴⁵⁾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된 내용을 성사 안에서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⁴⁶⁾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사는 주관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성사를 거행하는 주체가 그리스도 자신이란 것 때문에 강제하는 힘을 교회법에 부여하는 법률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⁴⁷⁾

2. 교회법에 대한 이해와 교회법학 교육

2.1. 교회법에 대한 이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1983년 교회법전 반포식에서 행한 연설 중에, 교회법은 “교회의 생활 본성에 속하는 것”임을 밝히는 동시에 “법은 어떤 외형적 집합체이거나 유익하지 않은 체계이거나 현세적 권력의 잔여물도 아님”⁴⁸⁾을 밝히셨다. 이 연설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법은 조직체로서 외형적으로 첨부된 어떤 부가물도 아니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교회의 권력이 만들어낸 권력의 잔여물도 아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본성에 속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에 유익한 것이다.

사실 1983년 교회법전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Sacrae Disciplinae*

43) Klaus Mörsdorf, *op.cit.*, pp.184~186.

44) 클라우스 뢰르스도르프는 자신의 글에서 게르만법에서 취한 안수에 대한 표징을 예로 들고 있다. 안수는 동방 교회법에서 그리고 유대교 법에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 거룩한 법률적 표징이라고 설명한다. Cf. Klaus Mörsdorf, *op.cit.*, p.186.

45) Cf. Carlos J. Errázuriz M, *op.cit.*, p.65.

46) *Ibid.*, p.65.

47) Libero Gerosa, *Diritto Canonico*, Eupress, 2002, p.24.

48) Francesco D’Ostilio, *La storia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LEV, 1983, p.101.

Leges)에서도 교회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물론 ‘교회법전’ 자체와 교회의 법으로서 ‘교회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 이 교황령은 교회의 사회적 본성에 따른 규범들의 총체로 교회법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⁴⁹⁾:

“사실 교회법전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회는 사회적이고 가시적 조직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규범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계 제도와 조직의 구조가 가시적이기 위함이고,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직무, 특히 거룩한 권한과 성사가 올바르게 집행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상호 관계와 각 개인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고 제정되어 사랑에 입각한 정의에 따라서 조화될 수 있기 위함이고, 끝으로 더 거룩하게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살기 위해 취해진 공동체적 노력이 이 교회 법규에 의하여 유지되고 강화되며 증진되기 위함이다.”⁵⁰⁾

일종의 조직 사회로서 이해된 교회론에 근거하여 교회법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 비록 그 언어적 표현이 다르다고 해도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 생활의 전체 영역에서 그 수직적, 수평적 차원의 다양한 관계들을 사랑에 입각한 정의에 따라 조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성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법은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신비에 봉사하는 ‘친교의 법’(Diritto di Comunione)⁵¹⁾이라고 정의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친교라는 개념을 통하여 교회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했다. 수직적, 수평적, 가시적, 비가시적 측면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사에 법률적 뿌리를 두면서 교회의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그 법률성에 근거한 규범들의 총체로서, 교회법은 바

49) Cf. AA. VV., Carlos J. Errázuriz M./ Luis Navarro, *Il concetto di Diritto Canonico*, Giuffrè, 2000, pp.101~102.

50)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Sacrae Disciplinae Leges*), 1983.

51) Jean B. Beyer, *Dal Concilio al Codice*, EDB, 1984, p.30에서 이 표현이 바오로 6세가 사용한 표현임을 말한다.

로 친교에 봉사하고 친교를 실현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교회법 신학에 있어서 친교의 법신학을 발전시킨 대표적 교회법학자인 에우제니오 코레코(Eugenio Corecco)는 친교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법의 최종 목표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회법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교회적 공동선’(bonum commune ecclesiae)을 보증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친교’(communio)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실 친교는 독특한 어떤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보다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편교회와 개별 교회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이 법률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친교’의 실재는 동방의 ‘소보르노스티’(Соборность)가 추구하는 영신적 한계를 극복하는 구속력을 지닌다. 여기서 ‘친교’(communio)의 원리는 ‘복음의 새로운 법’(Lex nova evangelii)인 교회법의 형상적 원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리고 이 친교로부터 출발하여 교회법적 제도들의 법률적 틀은 그 형상적 차원이나 질료적 차원에서 자리 잡아야 한다.”⁵²⁾

이런 내용을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법’(Jus)이 함축하고 있는 ‘정의’(Justitia)에 관한 부분이다. 조직된 사회로서의 교회이건 친교로 이해되는 교회이건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가시적 관계와 비가시적 관계는 ‘사랑에 입각한 정의’(Justitia in caritate innixa)⁵³⁾가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의’에 관한 로마법의 전통적 개념은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항구한 의지’⁵⁴⁾로 표현된다. 그리고 성 토마스가 말한 것처럼 “정의는 인간이 항구한 의지로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돌려주려는 덕”⁵⁵⁾을 뜻한다. 그렇지만 교회법의 역할이 이런 로마법적 정의 개념과 윤리 신학적으로 이해된 덕행으로서 정의 개념에만 머

52) Eugenio Corecco, *Jus et Communio I*, a cura di Grazioano Borgonovo e Arturo Cattaneo, Piemme, 1997, p.213.

53)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Sacrae Disciplinae Leges*), 1983.

54) Dig., I, I, 10: “Justitia est constans et perpetua voluntas ius suum unicuique tribuere.”

55)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I-II, p.58, a.1: “Justitia est habitus secundum quem aliquis constanti e perpetua voluntate ius suum unicuique tribuit.”

무를 수는 없다. 교회 안의 관계는 수평적이기도 하지만 수직적이기도 하고, 가시적이며 비가시적 관계도 포함된 친교의 관계이기 때문이다.⁵⁶⁾ 정의는 단순히 각자의 것을 분별하여 각자에게 법적인 기술을 통해 잘 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개별적이거나 사회적 영역에서 타인의 몫을 인정하고 역동적인 사랑을 통해 그에게 돌려주려는 진정한 애덕의 실천이다.”⁵⁷⁾

그리고 “정의는 어떤 측면에서 법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 법은 정의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⁵⁸⁾이란 점을 전제한다면 교회법은 애덕의 진정한 실천인 정의에 부합해야 하고 그 정의는 교회의 최고 원리인 애덕에 뿌리내린 정의이어야 한다.⁵⁹⁾ 사

56) 참조: 바오로 6세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교회론에 기초하여 친교의 원리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의무와 권리들은 초자연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신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고 이 목표는 교회의 제도들과 법의 최고 목표이어야 함을 밝히셨다. 이런 의미에서 친교인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서 법은 사랑의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Paolo VI, *Discorso ai partecipanti al II Congresso Internazionale di Diritto Canonico*, 1973: “Di conseguenza, i diritti e i doveri nella Chiesa hanno un'indole soprannaturale: se la Chiesa è un disegno divino - Ecclesia de Trinitate - le sue istituzioni, pur perfettibili, devono essere stabilite al fine di comunicare la grazia divina e favorire, secondo i doni e la missione di ciascuno, il bene dei fedeli, scopo essenziale della Chiesa. Tale scopo sociale, la salvezza delle anime, la «salus animarum», resta lo scopo supremo delle istituzioni, del diritto, delle leggi. Il bene comune della Chiesa raggiunge perciò un mistero divino, quello della vita della grazia, che tutti i cristiani, chiamati ad essere figli di Dio, vivono nella partecipazione alla vita trinitaria: Ecclesia in Trinitate. In questo senso il Concilio Vaticano II ha parlato della Chiesa anche come «comunione» (Cfr. *Lumen Gentium*, 4, 9, 13, etc.), ponendo così in luce il fondamento spirituale del Diritto nella Chiesa e la sua ordinazione alla salvezza dell'uomo: sicché il Diritto diventa Diritto di carità in questa struttura di comunione e di grazia per tutto intero il Corpo ecclesiale.”

57) Reginaldo Pizzorni, *La Filosofia del Diritto secondo S. Tommaso d'Aquino*, ESD, 2003, p.34.

58) *Ibid.*, p.33.

59)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황 바오로 6세께서 1974년에 재판관들과 교회법원 종사자들을 위한 교회법 재교육 과정에서 행하신 연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 교황님은 정의가 없는 사랑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신다: Paulus VI PP., “Allocutio iis qui in Gregoriana Studiorum Universitate «Cursui renovationis canonicae pro iudicibus aliisque tribunalium administris», AAS 66(1974), 12: “Primae partes attribuendae profecto sunt caritati; sed caritas sine iustitia, quae legibus exprimitur, consistere non potest. Ambae simul incedere atque inter se compleri debent, cum ex unico fonte profluant, qui est

실 “믿음과 희망과 애덕은 말씀과 성사의 법률적 힘에 뿌리 내린 친교인 교회의 구조적 관계 조각들을 구성하는 사회적 가치들이다.”⁶⁰⁾ “믿음과 희망과 애덕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 교회적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향주삼덕에 그리스도 교적 생활의 모든 근본적 가치들이 좌우되며 그곳에 통합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타인에게 속한 것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에게 속한 것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⁶¹⁾

2.2. 교회법학 교육

가톨릭교회는 교회법학⁶²⁾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교회는 미래의 사제들인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과, 교

Deus. Ceterum, ut ait S. Paulus, regnum Dei est «iustitia, et pax, et gaudium in Spiritu Sancto» (Rom 14,17). 시역: “참으로 사랑이 항상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으로 표현되는 정의가 없는 사랑이란 존재할 수 없다.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로마 14,17)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과 정의는 그 유일한 원천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다.”

60) Eugenio Corecco, *op.cit.*, p.274.

61) *Ibid.*, p.274.

62) 이 자리에서 교회법학이 신학의 한 분야인지 아니면 법학의 한 분야인지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법학에 대해서 각 학파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표현이 다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교회법학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참고할만한 개념은 예수회 교회법학자인 잔프랑코 기를란다(Gianfranco Ghirlanda)의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지 않나 싶다. “교회법은 신자들의 관계를 연구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그 관계들은 은사들과 성사들, 직책과 임무들에 의해서 결정된 관계들로서 거기에는 서로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정법적 규범들과 법률의 형태로 만들어진 행동의 규범들을 만든다. 이런 법률들과 규정들은 교회의 제도들을 구성하도록 적법한 권위에 의하여 주어진 것들이다.”: “Il diritto ecclesiale é la scienza che studia e spiega quelle relazioni tra i fedeli, chedeterminate dai carismi, dai sacramenti, dai ministeri e dalle funzionisono fornite di obbligatorietà e creano regole di condotta formulate in leggi e norme positive date dall'autorità legittima, in modo da formare, nel loro insieme, le istituzioni ecclesiali.” Gianfranco Ghirlanda, *Introduzione al Diritto Ecclesiale*, GBP, 2013, pp.67~68.

회법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으로 구별하여 교회법학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구분이 필요한 것은 신학생 양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법학 교육과 교회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회법학 교육은 같은 교회법을 전수하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전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 교령」은 “교회법을 설명할 때나 교회사를 가르칠 때에, 이 거룩한 공의회에서 발표한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에 따라 교회의 신비를 숙고하여야 한다”⁶³⁾고 발표했다. 그리고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은 1975년에 교회법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제직을 지망하는 신학생들에게 교회법학을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람을 발표한 바 있다.⁶⁴⁾ 1985년에 발표된 「사제 양성 기본 지침」에서도 교회법에 대한 교육을 언급하고 있다.⁶⁵⁾

교회법학에 대한 교육은 현행 교회법전 제252조 3항에서 사제 양성 과정을 위한 의무적 과목임을 명시하고 있고, 교회법학은 성경, 교리, 윤리, 전례, 철학과는 다른 고유한 방법론으로 전수되어야 한다고 제253조 2항은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교황청 성직자성은 「사제 양성 기본 지침」을 통해 성령의 활동에 봉사하고 효과적인 사목활동을 촉진시키며 특히 가정 사목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교회법의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⁶⁶⁾

앞서 언급한 교회법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들을 통하여 교회법학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교육되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3) 「사제양성교령」 16항.

64) 참조: 가톨릭교육성,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 『사제양성 —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엮음, 1993, 265~274쪽.

65) 참조: 가톨릭교육성,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 『사제양성 —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엮음, 1993, 31~123쪽.

66) 참조: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성소의 선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건전한 가르침에 따른 교회론에 기초하여 교회법을 전수해야 한다는 점⁶⁷⁾

— 교회법은 그 최고의 법으로 영혼들의 구원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것은 하느님의 의지에 상응하는 것이란 점⁶⁸⁾

— 교회법의 신학적 원리들과 개별 규정들의 원칙들이 조화롭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⁶⁹⁾

— 교회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사목활동, 특히 가정사목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삼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⁷⁰⁾

— 각 시대의 신학과 연계된 법의 역사와 그 나라의 국법에 대한 이해도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⁷¹⁾

— 일치 운동, 특히 전례와 성사에 관련된 일치 운동의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⁷²⁾

— 교회 행정 및 사법 분야에 대한 활동과 소송 분야에 대한 실습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⁷³⁾

— 사목분야, 특히 가정 사목에 연관된 많은 문제와 상처들이 교회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점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는 점⁷⁴⁾

— 교회법학은 필수 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⁷⁵⁾

다음으로 살필 것은 교회법 전문가 양성 곧, 교회고등교육 기관

67) 참조: 「사제양성교령」 16항; 가톨릭교육성,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 I.

68) 참조: 교황청 성직자성, 앞의 책, 174항; 가톨릭교육성,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 79항.

69) 참조: 가톨릭교육성,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 II. 2; 가톨릭교육성,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 79항.

70) 참조: 가톨릭교육성,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 II. 3; 교황청 성직자성, 앞의 책, 174항.

71) 참조: 가톨릭교육성,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 II. 3.

72) 참조: 같은 글, II. 3.

73) 참조: 같은 글, II. 4.

74) 참조: 교황청 성직자성, 앞의 책, 174항.

75) 참조: 가톨릭교육성,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 II. 1; 교회법 제252조 3항.

으로서 교회법대학원에서 교회법 교육에 관한 것이다. 교회법학대학원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은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에서 다음과 같이 잘 표현되어 있다:

“라틴 또는 동방의 교회법대학원은 복음의 법에 비추어 그리고 학생을 심도 있게 교육함으로써 교회법 과목들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자, 교수, 기타 교회의 특정 직책에 종사하기 위한 훈련을 받을 사람을 양성한다.”⁷⁶⁾

인용된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회법대학원이 제공하는 교회법학 교육은 우선 교회법 과목들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연구자, 교수, 교회의 특정 직책에 종사하기 위한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있는 것이다.

교육기간을 살펴본다면 「진리의 기쁨」은 교회법 석사 과정을 위해 3년을 요구한다.⁷⁷⁾ 비오 11세 교황님이 교황령 「학문의 주인이신 하느님」(*Deus Scientiarum Dominus*)에서 요구했던 기간은 2년이었고⁷⁸⁾ 이런 기간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Sapientia Christiana*)에서도 동일했다.⁷⁹⁾ 그러나 2002년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 「교회법 대학의 연구 과정 개편에 관한 교령」을 통해서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의 제76조와 그 시행 규칙 제56조와 제57조를 개정하면서 3년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밟아 현재에

76)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 제77조에서 교회법대학원에 대한 부분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그리스도교적 지혜」(*Sapientia Christiana*) 제75조에서 사용된 문장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77)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 제78조 나).

78) Cf. Pius XI PP., Const. Ap., *Deus Scientiarum Dominus: De Universitatibus et Facultatibus Studiorum Ecclesiasticorum*, TITULUS III De ratione studiorum, Art. 43 Licentia conferri non potest: b) in lure canonico ante expletum annum secundum. AAS 23(1931), 258.

79) 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Sapientia Christiana*), 1979, 제76조: 교회법 대학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과정은 적어도 1년 또는 2개 학기로 하며, 다음 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교회법 총론 및 관련 과목을 가르친다. 나) 제2과정은 2년 또는 4개 학기로 하며, 교회법 관련 학과와 함께 교회법전 전체를 심도 있게 가르친다. 다) 제3과정은 적어도 1년 또는 2개 학기로 하며, 이로써 교회법 수업이 종료되고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이르게 된다.⁸⁰⁾

교회법 석사 과정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주요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교회법을 연구하기에 학생들의 라틴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신학이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들⁸¹⁾이 최소한의 신학적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었다. 현행 규정에 따른 교회법대학원의 교육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78조 교회법 대학의 학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과정은 2년 또는 4개 학기이다. 이미 국법 학위가 있는 이들도 예외 없이, 이전에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회법의 기본 개념들을 익히고, 교회법의 심화 학습에 필요한 철학과 신학 과목들을 공부해야 한다.

나) 제2과정은 3년 또는 6개 학기이다. 이 과정 동안, 교회법을 그 모든 표현에서 — 규범적, 법리적, 교리적, 실천적인 그 모든 표현, 그리고 특히 라틴 교회 법전이나 동방 교회 법전의 모든 표현에서 — 교도권 문서와 규율 관련 문서 등 모든 원천들을 완전히 숙지하면서, 교회법 관련 다른 학과목들과 더불어, 심도 있게 배워야

80) 참조: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교회법 대학의 연구 과정 개편에 관한 교령」, 2002: I.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의 제2부 특별 규정 제76조 교회법 대학의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과정은 철학이나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 4학기 곧 2년으로 하며, 이미 국가법 학위를 취득한 이들도 제외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교회법 고등 교육에 요구되는 전반적인 교회법 교육과 철학과 신학 과목들에 대한 일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제2과정은 모든 이를 위하여 6학기 곧 3년으로 하며, 이 기간에 교도권의 가르침과 규율의 법원(法源)을 충분히 다루면서 교회법전 전체를 심도 있게 가르친다. 또한 교회법과 관련된 다른 과목들도 가르쳐야 한다. 다) 제3과정은 적어도 2학기 곧 1년으로 하며, 이로써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를 위한 교회법 교육이 종료된다.

81)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령 「진리의 기쁨」, 제78조: 가) 제1과정은 2년 또는 4개 학기이다. 이미 국법 학위가 있는 이들도 예외 없이, 이전에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회법의 기본 개념들을 익히고, 교회법의 심화 학습에 필요한 철학과 신학 과목들을 공부해야 한다.

한다.

다) 제3과정은 적절한 기간 동안 지속된다. 이 과정의 학생은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학문 연구에 필요한 교회법 공부를 완성시켜 나간다.”⁸²⁾

교회법대학원의 교육기간이나 교육목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과정은 사제직 지망자들인 신학생들의 교회법학 교육과는 엄연하게 구분된다.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은 교회법대학원의 방법과 다르게 전수되어야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과 전공 분야에 해당하는 깊은 연구 내용이 사제 양성에 중요한 것이 아니면 신학교 교회법학 교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사제 양성을 위한 계획서에는 교회법학의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그 목록이 정해져야 한다.⁸³⁾ 이와는 달리 교회법대학원은 다음의 교과 과정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법전 전체와 이와 관련된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교회법학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61조 필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제1과정 가) 철학 기초: 철학적 인간학, 형이상학, 윤리학. 나) 신학 기초: 성경 입문, 기초 신학, 계시론, 삼위일체 신학, 그리스도론, 은총론, 특별히 교회론, 성사총론과 성사각론, 기초 윤리 신학과 특수 윤리 신학. 다) 교회법 개론. 라) 라틴어.

2. 제2과정 가) 교회 법전과 동방 교회 법전, 기타 현행 규범들. 나) 관련 과목, 곧 교회법 신학, 법철학, 로마법 기초 개념, 국가법의 요소, 교회법 제도사, 교회법원사(教會 法源史), 교회와 시민 사회 관계, 교회법 집행과 재판 실습. 다) 라틴 교회법 학부생은 동방 교회법 입문, 동방 교회법 학부생은 교회법 입문. 라) 라틴어. 마) 각 대학이 요구하는 선택 과목, 실습과 세미나.

3. 제3과정 가) 라틴어 교회법. 나) 각 대학이 요구하는 선택 과

82) 교황 프란치스코, 같은 글, 제78조.

83) 참조: 가톨릭교육성,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 III. 6.

목, 실습과 세미나.”⁸⁴⁾

3. 개별 교회 안에서 교회법의 역할

3.1. 교회법의 포괄적 봉사 영역

앞서 우리는 교회법은 교회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며 친교의 교회에 봉사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보편교회가 시공간의 자리에서 존재하는 방식인 개별 교회들에서 맺고 있는 친교의 관계는 사랑에 기초한 정의에 따라서 맺어져야 하며 이런 친교의 중심에는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주교들의 일치는 물론 신자 대중이 이루는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이다. 그리고 개별 주교들은 자기 개별 교회 안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가 된다”⁸⁵⁾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개별 교회 안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가 되는 주교들의 직무와, 사랑에 기초한 정의에 따라 친교의 관계를 촉진하고 형성시키는데 기여하는 교회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주교들은 자기 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주교는 교황과 더불어 평화와 사랑과 일치의 유대 안에서 온 교회를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화, 사랑, 일치의 유대에 봉사하는 교회법은 개별 주교들의 사목 직능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며, 교회법 전문가들은 개별 교회 전체 신자 공동체의 질서 있고 평화로운 사회생활, 사도직, 모든 이의 권리가 올바르게 보호되도록 개별 주교들의 사목 직능에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⁸⁶⁾

이런 면에서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은 매우 적절하게 개별 교회 안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인 주교들에게 교회법

84)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교황령 「진리의 기쁨」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 가톨릭교육성의 적용 규범」, 제61조.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제58호, 51쪽.

85) 교회헌장 23항.

86) 참조: 가톨릭교육성,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 III. 6.

전문가들이 왜 협력해야 하며 그 협력이 교회에 어떻게 공헌하는지 잘 설명해 준다:

“사실 교회법전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회는 사회적이고 가시적 조직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규범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계 제도와 조직의 구조가 가시적이기 위함이고,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직무, 특히 거룩한 권한과 성사가 올바르게 집행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상호 관계와 각 개인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고 제정되어 사랑에 입각한 정의에 따라서 조화될 수 있기 위함이고, 끝으로 더 거룩하게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살기위해 취해진 공동체적 노력이 이 교회 법규에 의하여 유지되고 강화되며 증진되기 위함이다.”⁸⁷⁾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교육성이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에서 교회법은 보편교회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 교회의 모든 영역의 조직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적절했던 것이다.⁸⁸⁾ 교회법이 필요한 영역의 목록을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일지라도 적어도 어떤 분야에 교회법이 필요한지 대략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포괄적이지만 교황령 「진리의 기쁨」과 가톨릭교육성의 회람을 기초로 교회법 전문가들이 필요한 교회 영역들이 어느 곳인지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⁸⁹⁾

- 교구청의 직제, 교구 행정 및 관구 법원, 기타 교회의 특정 직책
- 주교회의, 각종 회의
- 개별법을 기초하고 적용하는 일, 공통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한 관할권의 승인을 받아 개별법을 입안하는 일과 그 적용
- 신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

87)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Sacrae Disciplinae Leges*), 1983.

88) 참조: 가톨릭교육성,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 II.

89) 참조: 같은 글, 271~272쪽, 274쪽;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령 「진리의 기쁨」, 제77조.

- 일선 사목을 직접 담당하는 사제들의 사목직에 필요
- 연구자, 신학교 교육을 위한 충분한 교수 및 기타 교원 확보 등
- 수도회 공동체의 관리와 행정 및 수도회의 개별법 개정 작업⁹⁰⁾

3.2. 교회법 학위나 교회법학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임무들

교회는 그 임무의 성격상 교회법 학위, 적어도 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법대리,⁹¹⁾ 부사법대리,⁹²⁾ 재판관,⁹³⁾ 검찰관,⁹⁴⁾ 성사보호관⁹⁵⁾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⁹⁶⁾

그러나 교회법적 학위는 아니지만 교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전문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임무들이 있는데⁹⁷⁾ 변호인,⁹⁸⁾ 예심관,⁹⁹⁾ 배심관,¹⁰⁰⁾ 법원 사무처장,¹⁰¹⁾ 자문위

90) 수도회 역시 수도회 공동체의 관리와 행정 및 수도회의 개별법 개정 작업을 위해서 교회법 전공자들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수도자는 첫 서원 이후 적당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런 교육에서 학위 또한 포함된다(제660조 1항). 교구와 수도회와의 관계, 수도회가 살고 있는 국가의 법에서 유효한 법률 행위들을 위해서는 수도회 안에 교회법 전공자가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참조: 가톨릭교육성,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 II.

91) 교회법 제1420조 4항; 동방교회법전 제1086조 4항.

92) 교회법 제1420조 4항; 동방교회법전 제1086조 4항.

93) 교회법 제1421조 3항; 동방교회법전 제1087조 3항.

94) 교회법 제1435조; 동방교회법전 제1099조 2항.

95) 교회법 제1435조; 동방교회법전 제1099조 2항.

96) 교회법 제378조 1항 5호, 제478조 1항은 주교직 후보자,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임무를 수행할 사람에게 교회법적 학위 혹은 교회법학에 적어도 정통한 전문가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교회법학의 학위가 절대적 요소가 아님도 알아야 할 것이다.

97) Cf.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Istr., *Gli studi di Diritto Canonico alla luce della riforma del processo matrimoniale*, 29 apr 2018 n.2.

98) 참조: 변호인의 경우 교회법학의 박사학위를 요구하지만 참으로 정통하다고 요구장 주교가 판단하여 승인하면 박사학위가 없어도 허용되고 있다. 교회법 제1483조; 동방교회법 제1141조.

99) 교회법 제1428조 2항; 동방교회법 제1093조 2항.

100) 참조: 교회법 제1673조 4항; 동방교회법 제1359조 4항.

101) 참조: 교회법 제483조 2항; 동방교회법 제253조 2항;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훈

원,¹⁰²⁾ 공증관,¹⁰³⁾ 감정인,¹⁰⁴⁾ 가정 사목 전담자,¹⁰⁵⁾ 본당 사목구주임¹⁰⁶⁾의 경우가 그렇다.

주목할 영역은 혼인 사목에 대한 것이다. 우선 교구장 주교는 혼인의 문제로 고통 받는 이들을 사도적 정신으로 동반해 줄 의무를 지니며 이들에 대한 사목적 염려를 본당 사목구 주임과 공유해야 한다.¹⁰⁷⁾ 혼인의 통상적 절차 또는 간략한 소송 절차든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통합적인 혼인 사목 기구가 필요하고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있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¹⁰⁸⁾ 이런 규범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현 교황님은 혼인 사목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형태로, 문제가 있는 부부들을 동반하는데 교회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점이다.¹⁰⁹⁾

지금 열거한 교회 임무들은 주로 혼인법과 가정 사목에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 교회법원과 연계되어 있는 임무들이다. 어찌 보면 이 임무들은 교구장 주교의 사법권에 연관된 임무들이라 하겠다.

사랑에 기초한 정의는 단지 사법권 영역에서 신자들 사이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 영역에서도 그것이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별 교회의 삶에는

령 「혼인의 존엄」(*Dignitas Connubii*), 제63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102) 「혼인의 존엄」, 제113조 1항.

103) 참조: 교회법 제483조 2항; 동방교회법 제253조 2항; 「혼인의 존엄」, 제63조.

104) 「혼인의 존엄」, 제205조 2항.

105)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령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에 관한 혼인 무효 선언 소송 사건의 절차 지침,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새로운 규범」,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71쪽.

106) 같은 글, 제3관.

107) 참조: 같은 글, 제1관; 교회법 제383조 제1항; 제529조 제1항.

108) 참조: 「교황령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에 관한 혼인 무효 선언 소송 사건의 절차 지침」, 제2조 제3조.

109)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혼인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교황령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을 반포하셨던 것은 절차를 합당하게 단순화시켜 그것을 신속하게 진행시킴으로써 지연된 재판 판결로 인한 어둠의 불확실성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게 할 목적을 지니고 계셨다. 다시 말해서 이 교황령은 사법적 영역에 사목적 정신을 온전히 반영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적 권리 보호 영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행정에 관련된 영역도 있으며 특히 행정적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다. 오히려 입법적 영역에서 입법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그렇게 빈번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지역 교회법을 입안한 다든가 개정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행정적 영역은 개별 교회의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만나게 되는 영역이다. 아니 어쩌면 교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까지 행정권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인간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설정하시고 마련하신 수단을 행정적 특성을 통해 제공한다.”¹¹⁰⁾ 이 표현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행정권은 교회의 공적 필요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안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공적 업무가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행정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교회의 기구들과 행정 조직들, 그리고 법률적 행위들에 연관된 업무(입법 행위, 행정행위, 계약과 처벌에 대한 업무 등), 재산에 관련된 업무와 교도임무와 성화임무와 연결된 행정 규범들, 그리고 행정 소원과 소송에 관련된 업무 등¹¹¹⁾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교회법적인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구청의 행정 부서, 특히 사무처와 관리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교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¹¹²⁾ 물론 이들에게 교회법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교구 안에서 행정권의 영향이 미치는 방대한 영역을 고려한다면 이 분야에서 사목하는 이들이 교회법적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강력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110) Cf. Jorge Miras / Javier Canosa / Eduardo Baura, *Compendio di Diritto Amministrativo Canonico*, Edusc, 2007, pp.34~35.

111) *Ibid.*, p.55.

112) 교구청은 교구의 행정을 관리하는 곳이며 교구 전체의 행정에 속하는 모든 업무가 잘 조정되고 교구의 선익이 증진되도록 힘쓰는 곳이라고 말한다. 특히 법률적 효과가 보장되어야 하는 각종 기록문서들을 그 유효성을 고려하여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참조: 교회법 제469조, 제473조 1항, 제474조.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회법은 친교의 신비로 이해되는 교회의 본성에 속한 것으로 교회의 삶 전체에 걸쳐 필요한 것이다. 교회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이며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교회법은 바로 이런 친교의 신비인 교회에 봉사한다. 친교의 신비인 교회는 교계적으로 조직된 사회적 조직으로서 구성원들과 다양한 직무 사이의 정당한 관계 설정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확장에 봉사한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원들과 직무들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어떤 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어떤 편의 직무가 소홀하게 기능할 때 그것을 규제하는 법이 기능해야 할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그 교회법률을 통하여 이런 교회 친교를 이룩하려고 한다. 따라서 개별 교회 안에 존재하고 발생하는 다양한 것들은 교회법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개별 교회의 다양한 분야, 특히 사법, 행정, 입법 분야에서 교회법 전공자들을 요구한다. 물론 현재 한국 교회의 경우 그 임무 상 교회법 학위를 요구하는 자리에 전공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다루는 사안의 본성상 교회법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임무도 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은 그런 자리에 교회법 전공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교회법적으로 요구하는 것만을 충족해서 교구 전반의 일들을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조금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 교회법 전공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 교구와 수도회 등 개별 교회 안의 많은 조직, 단체들은 교회법 전공자들을 양성하는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가톨릭교회법대학원은 교황청 교육성 승인 한국 최초의 교회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이런 역할에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공의회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록한 전례에 관한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2012.

_____, 계시 헌장(*Dei Verbum*),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_____,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12.

_____, 현대 세계의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12.

_____,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Unitatis Redintegratio*),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12.

_____,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Optatam Totius*),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12.

2. 교황 / 교황청 문헌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Istr., *Gli studi di Diritto Canonico alla luce della riforma del processo matrimoniale*, 29 apr 2018.

Giovanni Paolo II, *Discorso alla Curia Romana*, 20-XII-1990.

Ioannes Paulus PP. II, *CODEX IURIS CANONICI*, Roma,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83.

_____, *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 Roma,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0.

Paolo VI PP, “Discorso al Congresso Internazionale di Diritto Canonico di Milano(1973)”, *Communianiones* 5(1973), 126~130.

_____, *Discorso ai partecipanti al II Congresso Internazionale di Diritto Canonico*, 1973.

Paulus VI PP, “Allocutio iis qui in Gregoriana Studiorum Universitate «Cursui renovationis canonicae pro iudicibus aliisque tribunalium administris», *AAS* 66(1974).

Pius XI PP., Const. Ap., *Deus Scientiarum Dominus: De Universitatibus et Facultatibus Studiorum Ecclesiasticorum*.

교황 비오 12세, 회칙 「그리스도의 신비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Sapientia Christiana*), 1979.

_____,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Sacrae Disciplinae Leges*), 1983.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령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에 관한 훈인 무효 선언 소송 사건의 절차 지침」,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_____,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 2017.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 『사제양성 -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엮음, 1993, 265~274쪽.

_____,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 『사제양성 -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엮음, 1993, 31~123쪽.

_____, 「교회법 대학의 연구 과정 개편에 관한 교령」, 2002.

_____, 「교황령 「진리의 기쁨」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 가톨릭교육성의 적용 규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58호.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훈령 「혼인의 존엄」(*Dignitas Connubii*),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성소의 선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교황청 신앙교리성,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회보』 71호(199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임시총회, 최종보고서.

3. 기타 문헌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AA. VV., Errázuriz M, Carlos J./Navarro, Luis., *Il concetto di Diritto Canonico*, Giuffrè, 2000.

Beyer, Jean B., *Dal Concilio al Codice*, EDB, 1984.

Castaño, J. F., *Introduzione al diritto costituzionale della Chiesa*, Roma, 1994.

Congregazione per la Dottrina della Fede, *Communio notio, lettera e commenti*, LEV, 1994.

Corecco, Eugenio., *Jus et Communio I*, a cura di Grazioano Borgonovo e Arturo Cattaneo, Piemme, 1997.

- D'Ostilio, Francesco., *La storia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LEV, 1983.
- Errázuriz M, Carlos J., *Il Diritto e la giustizia nella Chiesa*, Milano: Giuffrè, 2000.
- Gerosa, Libero., *Diritto Canonico*, Eupress, 2002.
- Ghirlanda, Gianfranco., *Introduzione al Diritto Ecclesiale*, GBP, 2013.
- Miras, Jorge / Canosa, Javer / Baura, Eduardo., *Compendio di Diritto Amministrativo Canonico*, Edusc, 2007.
- Mörsdorf, Klaus., *Fondamenti del Diritto Canonico*, Marcianum press, 2008.
- Philips, Gerard., *La Chiesa e il suo mistero nel concilio Vaticano II*, Jaca Book, 1975.
- Pizzorni, Reginaldo., *La Filosofia del Diritto secondo S. Tommaso d'Aquino*, ESD, 2003.
- 한영만, 「교회법 제368조에 나타난 보편교회와 개별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내재성(mutua interioritas)에 대한 고찰」, 『가톨릭신학』 제32호 (2018/여름), 93~102쪽.

국문초록

많은 신자들이 가톨릭교회에도 고유한 법전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 왜 법이 필요하냐고 질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믿는 교회 안에 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생각들의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신비에 대한 편향된 인식과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단지 영적이고 비가시적인 존재로 이해하여, 교계제도를 비롯하여 그 어떤 조직이나 기구도 필요하지 않고 이 조직과 직무 사이의 관계를 위한 법은 인간의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이며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친교의 신비다. 교회법은 친교의 신비로 이해되는 교회의 본성에 속한 것으로 교회의 삶 전체에 걸쳐 필요한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고유한 교회법전을 갖고 있고 이것을 교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봉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교회법은 결코 사랑과 친교인 교회 사목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랑에 기초한 정의’에 근거하여 다양한 관계들을 하느님의 뜻과 교회의 정신에 따라서 인도하는 도구 역할을 수행한다.

교회법은 바로 이런 친교의 신비인 교회에 봉사한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원들과 직무들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어떤 편이 권리가 침해되거나 어떤 편의 직무가 소홀하게 기능할 때 그것을 규제하는 법이 기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편교회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개별 교회 안에 존재하고 발생하는 다양한 것들은 교회법에 따라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다. 그래서 교회는 개별 교회의 다양한 분야, 특히 사법, 행정, 입법 분야에서 교회법 전공자들을 요구한다.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다루는 사안의 본성상 교회법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임무도 있다. 교회법적으로 요구하는 것만을 충족해서 교구 전반의 일들을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조금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 교회법 전공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 교구와 수도회 등 개별 교회 안의 많은 조직, 단체들은 교회법 전공자들을 양성하는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런 의미에서 교회법학 교육은 개별 교회의 무거운 책임으로 여겨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주제어: 교회법, 교회법대학원, 친교, 보편교회, 개별 교회.